특 허 법 원

제 2 부

판 결

사 건 2022허3922 등록취소(상)

원 고 주식회사 A

대표이사 B

지배인 C

소송대리인 변리사 오승건

피 고 D

변 론 종 결 2023. 3. 8.

판 결 선 고 2023. 3. 17.

주 문

- 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-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특허심판원이 2022. 6. 2. 2021당39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이 사건 등록상표

1) 출원일/ 등록일/ 갱신등록일/ 등록번호: 2001. 10. 23./ 2004. 2. 9./ 2014. 2. 7./ 제574074호

2) 구성: 장수마을

3) 지정상품: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침대, 비의료용물침대, 소파, 안락의자, 안마대, 책장, 팔걸이의자, 화장대

나, 이 사건 심결의 경위

- 1) 피고는 2021. 2. 5.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"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(2016. 2. 29.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73조 제1항제3호에 의해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."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.
- 2)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2021당399호로 심리한 다음, 2022. 6. 2. "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,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아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."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(이하 '이 사건 심결'이라 한다)을 하였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1, 2,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소의 법률상 이익 유무에 관한 판단

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가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인 2023. 2. 28. 특허청에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포기하는 신청을 함으로써 같은 날 그 말소등록이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.

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은 원고의 위와 같은 포기로 인하여 이미 적법하게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,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인 이 사건 심결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다 할 것이다.

3. 결론

따라서 이 사건 소는 결국 소의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,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구자헌

판사 이혜진

판사 김영기